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0. 7. 20일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대한상의 접수 과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, 샌드박스 이용 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샌드박스 사무국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음(아시아경제 7.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대한상의 접수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며, 정부와 샌드박스 사무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임
- ◇ 7.20일 아시아경제 <규제샌드박스 ‘느림보 처리’>, <진짜 사업하게 해준다더니…규제가 된 ‘규제 샌드박스’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대한상의 지원센터 출범 후 처리 지연, 승인 신청 엄두도 못내, 규제특례심의위 세분화하고 인력 충원해야 등 지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5.12일 대한상의 민간 접수창구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93건(산업부, 과기부, 금융위 안전포함) 중, 20건 처리완료(규제 신속확인 7건, 실증특례·임시허가 부여 13건), 32건은 규제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준비 중이며, 나머지 41건은 신청기업미팅·법률검토·안전작업 진행중으로 정상추진 중임
- 또한, 접수된 안전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, 기업의 안전 작성을 돕기 위해 ①샌드박스 사무국의 지원 인력을 확충*하고 있으며, ②유사·동일안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운영** 중임

* (산업기술진흥원) '19. 2월 9명→ 현재 12명(변호사 포함), (대한상의) 13명

** 전문위원회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심의기간 단축

- 향후에도 ❶신청 시 컨설팅 제공, ❷단계별 가이드북 배포, ❸신청 기업·규제부처와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신청 기업의 제도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

* 기사에서 언급한 자동차 회사 A는 현재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어,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준 사례임

□ ‘규제 샌드박스’ 제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규제적용에서 배제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므로,

- 시험·검증 과정에서 규제해소의 필요성과 국민의 생명·안전·환경 보호 등 중요한 가치도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따라서, 접수된 안전별로 안전 작성 → 규제부처 의견 수렴 →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집중 논의를 거친 후, 최종적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,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 처리를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

※ 문의 : 규제샌드박스팀 권기만 팀장(044-203-4520), 신상훈 사무관(4523)